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9141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914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E

2. F

변론종결 2021. 9. 8.

판결선고 2021. 10.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66,218원 및 그중 79,573,800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74,960원 및 그중 15,399,020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4. 9.까지는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같은 쪽 제13행의 “피고”를 “피고 회사”로, 제4쪽 제11행의 “피고들의”를 “피고들에 대한”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최규연, 판사 최태영